조기취업형 계약학과란

Q1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란 무엇인가요?

A : 3년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수여

- 1학년: 전공기초능력과 현장실무 기본교육 집중이수 (기업 근무 안함)
- 2-3학년: 기업에 근무하며 해당 직무 관련 심화교육 및 직무역량 고도화



Q2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 1년간 전공기초능력과 현장실무 기본교육을 집중 이수한 2학년부터 채용하게 되므로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맞춤형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신규직원의 skill mismatch에서 오는 기업의 비용부담(기업 내 재훈련비용 및 훈련기간 등)을 없앨 수 있습니다.

특히 2-3학년에서는 기업의 project에 참여시키는 것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채용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개발에 교육의 초점을 두게 됩니다.

* 그동안 한양대학교 ERICA는 현장중심의 실용교육을 위해 국내대학에서 처음으로 IC-PBL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첨단 기자재를 갖춘 실습시설과 Maker Space 등으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최고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Q3 전공별 모집인원은?

A : 학부명은 스마트융합공학부로 전공별 모집인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6학년도)

구 분	모집인원
소재·부품융합전공	24
로봇융합전공	24
스마트ICT융합전공	24
건축IT융합전공	24
스마트건축구조시공융합전공	54
소계	150

Q4 학년별 이수학점과 수업 형태는?

A : 학년별 이수학점과 수업 형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매학기 시작 전에 시간표를 공유드리며 소속 학생에 대한 수업 협조 요청 드립니다.
1학년은 주간과정, 2-3학년은 평일 2-3회 야간 및 주말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학년은 야간수업, 2-3학년은 주간수업 수강이 불가합니다.

학년	이수학점	정규학기별	계절학기별	수업형태
1	60	각 21	각 9	주중 주간 수업
2	30	각 12	각 3	*야간/주말(토요일)
3	30	각 12	각 3	*야간/주말(토요일)
소계	120			

※시간표는 학기별 교강사 및 전공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학기 시간표 안내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기업이 지는 부담하는 비용은?

A : 회사는 소속 학생의 2-3학년 재학기간의 등록금 50%를 부담해야하며, 기업부담금 고지서는 일반계산서로 발행됩니다. 또한 기업부담금은 대상 학생의 임금, 퇴직금 등에서 공제 되지 않아야합니다. (근로자에게 부담 전가 금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⑥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학년	정규학기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수업료 분담 (*2026년도 기준)
2~3	2,491,000원 (4,982,000원)	130,500원 (261,000원)	•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 "기업 50%, 학생 50%"

*학업연장 또는 계절학기 재수강 과목에 한해서는 기업부담금이 발생 되지 않습니다.

Q6 학생들의 졸업 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 수업연한(3년) 내에 전공학점은 96학점 이상, 전체 졸업학점은 120학점 이상을 취득 및 캡스톤디자인 과목 이수시 졸업이 가능합니다. 사회봉사, 산학협력영역, IC-PBL, 영어전용강좌 의무 이수 등 대부분의 기타 졸업조건은 모두 면제를 받습니다.

Q7 계약학과 전공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로봇융합전공'→ '스마트ICT융합전공'

A : 입학 후에 선발한 학생에 대한 전공 변경은 불가합니다.

Q8 학생의 성적이 안 좋거나 졸업 요건을 못 채웠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A : 가급적 매 학기 이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학사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준 이하의 성적을 받을 경우 학사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 시까지도 졸업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학업연장' 처리되어 학기를 추가로 등록하여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학업연장 학기의 등록금은 학생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Q9 졸업 시 어떤 학위를 받게 되나요?

A : 공학사입니다. 공학 계열로 구성된 교육과정 이수에 따라 공학사 수여가 이루어지며, 졸업장이나 졸업증명서에 학과명과 함께 명기됩니다.

Q10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수업은 어떤 시간대에 이루어지나요?

A : 2~3학년은 야간과정으로 편성되어 있고, 야간과정의 시간 기준은 평일 19시 이후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Q11 휴학이 가능한가요?

A : 학칙에 근거해 일반휴학은 불가하며 병가휴학, 입대휴학 등 일부 휴학만 허용됩니다.
모두 관련 증빙이 필요한 경우이며, 휴학으로 인해 학생의 학적 상태가 변경될 경우 해당 업체에 필히 확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시행세칙 제12조 (일반휴학)

① 학생이 질병으로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서(본교 소정양식)와 4주 이상의 진단서(종합병원 발행)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학대학 스마트융합공학부 학생은 재학 중 질병이나 입대, 입대 후 귀향조치, 임신 및 출산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Q12 일반 학생과 비교하여 어떤 것들의 제한을 받게 되나요?

A : 대부분 일반 학과 학생과 동일합니다.(학교 시설물 이용, 동아리 참여, 학생회 참여 등)
다만, 일반휴학, 전과, 다전공/복수전공, 편입, 재입학, 졸업유보 등은 불가합니다.

Q13 학생이 자진퇴사(또는 근로계약 미체결)하게 된 경우 학적은 어떻게 되나요?

A :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하거나 징계 해고로 퇴직한 경우 제적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퇴사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 학생 본인이 등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잔여기간 재학이 가능합니다.
단, 이수해야 할 최소이수학점 미만인 경우는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재매칭이 안 될시 계약학과 규정에 따라 제적됩니다.

참여기업 자격요건

Hanyang University ERICA Campus

Q1 참여기업의 자격조건은?

A : 수도권 소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단, 기본형은 부설연구소 없어도 됨)
고용 계약의 유지 가능성을 감안하여 참여기업은 다음의 중 1개 항목 이상 충족 권고
-(인원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신용등급) 한국신용평가 신용등급 BBB-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정부인증)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자원통상부 등이 인정한 건실기업
-(우수기업) 상시근로자가 20인 미만인 기업 중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소 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Q2 기업의 참여유형은?

A :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산학협력 형태에 따라 대학과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및 기술사업화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지원 가능

① 기업맞춤식 교육 중점형(기본형)

○ (목적)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맞춤형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공급
– 취업 후(2, 3학년) 기업에 근무하면서, 학교에서 재직자 향상 교육과정을 통하여 해당직 관련 심화교육 및 직무역량 고도화

② 기술 사업화형

○ (목적) 참여 중소·중견기업에게 대학이 보유한 우수 미활용 기술(지적재산권, 연구논문, 연구개발 결과 등)을 공개하고 참여기업과 매칭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 참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취업 후(2, 3학년) 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하는 프로젝트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 관련 교육 및 직무수행을 통해 연구역량 강화)

③ 연구개발(R&D) 지원형

○ (목적) 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필요에 따라 대학이 위탁기관이 되어 신기술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및 신제품 개발 지원
– 취업 후(2, 3학년) 참여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대학의 연구개발 자원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R&D프로젝트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
–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R&D역량강화를 위한 기업-대학 간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R&D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이 향후 기업의 R&D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참여기업 혜택

Q1 한양대학교 ERICA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기업만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한양대학교 ERICA LINC+사업단 공동장비센터의 고가·고급장비를 10%할인된 사용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RICA 공동장비센터에는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기 어려운 대표적 신뢰성 시험장비인 복합진동시험기, 고속피로시험기, 열충격챔버 등 고가·고급장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 280여개 기업이 5,500여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Q2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기업의 비용 환급제도 및 절차는?

A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 할 때, 이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 지원대상 : 대학과 산업체(우선지원 대상기업 등)가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과정의 계약학과가 이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 가능

- 2-3학년 전공수업에 적용하여 재직자 학생들은 필수 참여로 진행하지만, 해당 교과목의 교강사의 자격요건, 수업 운영방식 등에 따라 미진행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훈련(수업)의 사업주훈련 출결 80% 이상 되어야만 환급 진행되며 종강 후 수료보고 통해 수료 여부 및 환급액 안내 됩니다.

- 고용보험기금으로 진행되기에 고용보험 미납 또는 한도액 초과시 환급이 불가합니다.

① 훈련인정신청 및 실시신고	⇨	② 교육훈련실시	⇨	③ 훈련종료 후 수료보고
대학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및 지사)		• 대학(학생출석관리) • 학생(출석인증)		대학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및 지사)
				⇩
⑤ 훈련비용 지급	⇦			④ 훈련비용신청
공단 ⇒ 산업체				대학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및 지사)

인사관련(채용, 급여, 4대보험 등)

Q1 채용약정하고 입학한 학생과의 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는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나요?

A : 2학년 학사시작일과 동시에 근로를 하게 됨으로써(일과 학업을 병행) 그때부터 급여지급 및 4대 보험가입을 해야합니다. (학기시작일 이후 입사 불가)

Q3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근로계약서는 회사 양식에 따르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기한정함이 없는 정규직이어야하며 기한 설정시 졸업 이전에 계약만료는 불가합니다.

Q3 학생이 입사하면 근무지, 업무 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전반적인 근무 형태, 방식 등은 회사 지침에 따릅니다.
근무지는 학교 권역을 벗어나지 않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업무 특성상 지방 근무 시 학생의 학습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Q4 첫 입사와 달리 중간에 타부서 이동 가능한가요?

A : 부서이동 등이 사업주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타부서 이동 또는 타업무 배치 등은 사업주에게 속한 인사권으로서 폭 넓은 재량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전적, 포괄적으로 수행업무 등의 변경에 대한 동의조항이 존재하고, 취업규칙 등에서도 업무변경에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수행업무 변경 명령은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Q5 근로계약 체결을 앞두고 군대를 가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A : 2학년 학사시작 이전에 입영통지서가 확인되면 무등록휴학이 가능하기에 근로계약 또한 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사시작일 이후에 휴학을 한다면 등록을 해야하기에 근로계약 체결 및 기업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납부 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복학시 활용하게 됩니다.

Q6 근로 중간에 군입대인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퇴사처리가 아닌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병역법 제74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직원이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하는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휴직시 복직시기를 미리 근로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제64조(복직보장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 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7 기업부담금에 따른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A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소용되는 일정 경비(교육비 등)을 부담하고, 그 반대로 졸업 후 의무근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노무사 의견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간 동의하에 근로계약 체결 시 특약형태로 약정을 추가하거나 별도로 교육비반환약정서 등을 통해 체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무근로에 따른 교육비 반환 약정 체결시 재직한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금액이 설정되어야하며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는 것은 그 유효성이 부정 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운영지침에 따르면 희망사다리 장학금 처리 기준에 준용하여 1학기(6개월) 50% 등록금 지원 시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개월로 설정함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부담금은 4학기(2-3학년) 지원되므로 12개월로 설정함을 권고합니다.

※ '근로계약시 교육비 반환약정 관련 노무사 자문의견서' 참고

Q8 휴직기간 중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 : 휴직기간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휴직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별로 납부예외 또는 감면·면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고용보험의 경우,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휴직기간이라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 후에도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복직 시에는 '납부재개신고'를 하여야 국민연금보험료가 고지된다.
-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과 달리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고지유예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기 때문에 복직을 하면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한다.

<표> 4대보험 총정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시 신고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고용)신고서		사업장 가입자 취득 신고	직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휴직신고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연금보험료납부예외 신청서 (휴직확인서 첨부)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휴직확인서첨부)
휴직기간중 보험료 납입	없음		없음	-일반휴직: 복직 시 소급적용 (분할 가능) -군휴직: 보험료 면제

Q9 휴직기간 중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 되나요?

A : 휴직사유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등에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294, 2010.06.11.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9 학생 퇴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해주실 수 있나요?

A : 학생이 재학 중 본인의 귀책사유(자발적 퇴직, 징계해고 등)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되거나 제적처리 됩니다. 따라서 학생이 재학하면서 퇴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업 측의 사유(권고사직, 폐업, 사업장 이전 등)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이 유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사 당시 최소이수학점 미만일 경우,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재매칭이 안 될시 계약학과 규정에 따라 제적됩니다.

그러나, 졸업 후 퇴사하는 경우는 학적과는 무관하며 기업 직원복무 관련 규정, 사칙에 의합니다.